

규 칙

제23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순천시의회 규칙 등 공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포한다.

순천시의회 의장



2019년 3월 4일

순천시의회 규칙 제40호

붙임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u><신설></u>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 ~ 제11조 (생략)	제5조 ~ 제12조 (현행 제4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